

의안번호	2219949
의 퇴 인	여기구 의원
회 답 일	2026.10.12.
추 계 번호	26B3598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다. <u>국내에서 제조되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술</u> 3. “지역특산주”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이하 “농어업경영체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을 말한다. 가. 해당 농어업경영체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나. <u>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u> 5.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산업”이란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를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의무규정
2	안 제8조의2(전통주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술 중 국내에서 제조되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술을 전통주로 지정할 수 있다.(제1항) 1.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의 발효주류 중 탁주·약주·청주 및 과실주 2. 「주세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증류주류 중 소주·일반증류주 및 리큐르 3. 「주세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기타주류 제1항에 따른 전통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제2항)	재량규정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제3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된 전통주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재량·의무규정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제4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조(정의)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 참조
2	안 제8조의2(전통주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신설	—	• 미대상 – 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통주로 지정할 수 있는 술에 대한 기준과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현재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상세 사유

- 현행법은 전통주 등을 전통주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로 정의하고, 이 중 전통주는 식품명인과 무형문화재가 국산 농산물로 만든 술(민속주)과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생산, 관할·인접지역 생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인 지역특산주를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음
- 개정안은 전통주를 국내에서 제조되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농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술로 정의하면서, 지역특산주를 전통주로부터 분리하여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생산, 관할·인접지역 생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술로 전통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로 정의하는 내용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주와 관련하여 전통주의 품질·경쟁력 향상, 소비·홍보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술 소비를 확대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한국술산업육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표 2] 한국술산업육성 사업¹⁾ 개요

- (지원대상) 전통주 생산·판매업체,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
- (시행주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민간경상), 지자체(지자체경상)
- (예산규모) (2026년) 35억 4,400만원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전통발효식품육성(2832-310) - 한국술산업육성
- 주요 사업내용(관련 예산, 단위: 백만원)
 -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국내 우수 전통주를 발굴하고 소비자 및 유통업계 연계 홍보를 통한 업계 판로 확대 및 산업 활성화 도모(260)
 -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 소비자에게 우리 술에 대한 다양한 체험과 콘텐츠 제공으로 전통주의 인지도 확산 및 소비 촉진(440)
 - * (주요 행사) 개막식(우리술품평회 시상식 포함), 정책홍보관, 업체관(전시·시음·판매), 공개 컨설팅, 우리술 토크콘서트, 소비자 대상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 (전통주 갤러리) 전시·체험·컨설팅 등 우리술 종합홍보플랫폼 운영으로 전통주 인지도 제고 및 다양한 정보제공(600)

1) 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832-310)의 내역사업

- (판로확대)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판촉전 지원, 대형마트·편의점 연계 판촉 행사 진행 등 전통주 판매 지원(199)
- (찾아가는 양조장) 지역의 특색있는 양조장을 발굴하여 생산에서 관광·체험까지 연계된 복합공간으로 육성(819)
- (양조장 컨설팅) 창업자(3년 미만)의 경영 애로사항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통해 신규 제조업체의 조기 정착 유도(160)
- (양조용 발효제 보급) 양조용 국산 효모·누룩 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한 업계 품질 경쟁력 강화 도모(14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개정안의 시행으로 전통주의 정의가 변경되는 경우 기추진 중인 재정사업의 사업대상이 변화할 수 있어 재정사업의 규모도 변화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구체적 수준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또한, 전통주(지역특산주)는 주원료의 국산 농산물 사용이 의무적이며, 일정 요건 충족 시 주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른 전통주의 정의 변경이 재정수입(주세)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추계가 곤란함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